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2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의회사무국의 비서 업무 추진 인력 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“719명”에서 “720명”으로 1명 증원,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“24명”에서 “25명”으로 1명 증원(안 제2조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 3)

1) 총 계: 719명 → 720명(증 1명)

2) 일반직: 716명 → 717명(증 1명)

가) 6급 이하: 663명 → 664명(증 1명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 (가족복지과-44366호, 2025. 11. 12.)

라. 입법예고: 2025. 11. 10. ~ 11. 18.(8일간) / 의견없음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19명이며”를 “720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2호 중 “24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계		720			-		
정무직	소계	1			-		
	구청장	1	1				
일반직	소계	717			-		
	3급	1	1				
	4급	7	5	1	1		
	5급	45	25	2	4	2	12
	6급 이하	664			-		
별정직	소계	2			-		
	5급 상당 이상	1			-		
	6급 상당 이하	1			-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”정원“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719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<u>24명</u>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colspan="4">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직속기관</th> <th rowspan="2">사업소</th> <th row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총계</th> <th>3급</th> <th>4급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719</td> <td>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무직</td> <td>소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 <td>소계</td> <td>716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7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5</td> <td>25</td> <td>2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1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663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별정직</td> <td>소계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			직속기관	사업소	동	총계	3급	4급	5급	6급	총계	719		-							정무직	소계	1	-							구청장	1	1						일반직	소계	716	-							3급	1	1						4급	7	5	1	1				5급	45	25	2	4	2	12		6급 이하	663	-							별정직	소계	2	-							5급 상당 이상	1	-							6급 상당 이하	1	-		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720명</u>이며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25명</u>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colspan="4">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직속기관</th> <th rowspan="2">사업소</th> <th row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총계</th> <th>3급</th> <th>4급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720</td> <td>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무직</td> <td>소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 <td>소계</td> <td>717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7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5</td> <td>25</td> <td>2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1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664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별정직</td> <td>소계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			직속기관	사업소	동	총계	3급	4급	5급	6급	총계	720		-							정무직	소계	1	-							구청장	1	1						일반직	소계	717	-							3급	1	1						4급	7	5	1	1				5급	45	25	2	4	2	12		6급 이하	664	-							별정직	소계	2	-							5급 상당 이상	1	-							6급 상당 이하	1	-						
기관별 직급별		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			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계	3급	4급			5급	6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719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소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소계	71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7	5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45	25	2	4	2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	66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	소계	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 상당 이상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상당 이하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		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총계	3급	4급	5급				6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720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소계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소계	717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7	5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45	25	2	4	2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	66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	소계	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 상당 이상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상당 이하	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총 정원은 1명 증원되나 정원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
감원되어,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
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손미영
- 연 락 처: 052-290-3062